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연합협의회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44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

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
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
록 함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
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
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명시함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
합협의회를 의미하는 “협의회등”으로, “기관장”을 기관단위 협의회의
기관장과 연합협의회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기관장등”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추후 관계기관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단위 협회로 구성한다.

제3조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협의회”를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장(이하 “기관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을 “법 제2조제3항 또는 제2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협의회”를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원에 관한 사항(연합협회는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중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의2에 따른 연합협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협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협의회와 기관장”을 각각 “협의회등과 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협의회”를 “협의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관장”을 각각 “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협의회와”를 “협의회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협의회와 기관장”을 각각 “협의회등과 기관장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협의회와 기관장”을 각각 “협의회등과 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고, 기관장등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협의회”를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협의회는”을 각각 “협의회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관장”을 각각 “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근무시간중 협의회등 활동의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를 “협의회등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2.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관장”을 “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중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신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연합협의회는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생략) 1. <u>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u> 2.~7. (생략) ② (생략)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u>협의회를</u>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제4조(협의회등의 설립) ① <u>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u> ----- ----- ----- -----

②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
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
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

②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기관장(이하 “기관장
등”이라 한다)-----

④ 기관장등-----

제5조(협의회등규정) 협의회등은--

6.~10. (생략)
<신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등 _____
 _____ 협의회등 _____

 _____.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협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협회사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회사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회의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회사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회사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회사

④ -----
----- 협회사등-----

-----.

제8조(협회사등과 기관장등의 협의)

①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

②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

③ 협회사등----- 기관장등-----

----- 기관장등-----
-----.

④ 기관장등은 협회사등과-----

-----.

⑤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협회사

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회사와 기관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회사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회사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회사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협회의 의무) ① 협회사는 협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등과 기관장등-----
-----.

⑥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

⑦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

1.~4. (현행과 같음)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

② 협회사등과 기관장등-----
-----노력하여야 하고,
기관장등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회사등의 의무) ① 협회사등은 -----
-----.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각호 신설>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

② 협의회등은-----

-----기관장등-----

기관장등-----.

③ 협의회등이-----

-- 기관장등-----
--.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등 활동의 보장)-----

----- 협의회등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1.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
2.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제12조(협의회등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등-----
-----.

제13조(협의회등에 대한 지원) 기관장등--협의회등이 -----

<u>의회</u> 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 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 <u>협의회</u> 등-----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연 락 처	(044) 205 - 3291